

부속서 XIII

제6.2조에 규정된 정부조달에 관한 “접촉선”

1.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위한 “접촉선”은 다음과 같다.

대한민국의 경우:

재정경제부

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경우:

아이슬란드: 재무부

리히텐슈타인: 외교부

노르웨이: 현대화부

스위스: 경제부

2. 당사국들은 “접촉선”의 조정을 정기적으로 교환한다.